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0.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년 10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10.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전영표)

□ 제안이유

-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 임
- 본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골자

-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 67,670㎡(20,470평)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근생시설,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

구역면적	건축면적	공공시설면적 (도로, 녹지)	건폐율	용적률	계획세대수	비고
67,670㎡	63,846.2㎡	3,823.8㎡	19.63%	277.43%	1,428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지구 내에서 제척지구를 뺀 이유는?	○ 기이 노후주택을 개량한 지역이며 소유주들이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요구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 제척하였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찬성의견서 채택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첨부서류 : 의견서 1부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

의안번호	제388호	안건명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
제 출 자	부천시장	의 결 연월일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2000. 10. 16)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본 지역을 도시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2000년 10월 16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안번호	제388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제출년월일 : 2000. 10.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사유

-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임
- 본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골자

-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 67,670㎡(20,470평)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근생시설,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

구역면적	건축면적	공공시설면적 (도로, 녹지)	건폐율	용적률	계획세대수	비고
67,670㎡	63,846.2㎡	3,823.8㎡	19.63%	277.43%	1,428	

□ 관련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4조1항 내지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참고사항

- 주민의견청취결과
 - 공람기간 : 2000. 8. 30~9. 18(국, 공휴일 제외 14일 간)
 - 공람매체 : 중부일보(8. 30일자) 게시, 개별통보
- 제출의견 : 11건

의견 제출자	의견요지	검토의견	비고
약대동 153-11 이경수 외 10명	지구 내에서 제척 요구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여 제척은 어렵고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중동 33-7번지 김인태 외 11명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금전청산 요구	지구지정과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관리 처분시 반영하겠음	
도 시 과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계획상 경관녹지를 확보하였으며 추후 여건 변동시 검토하겠음	
부천교육청	중학교 1개소 설치	관련법규상 2군린주거구역단위(1군린주 거구역 : 2천세대에서 3천세대)당 1개소 의 비율로 배치토록 되어 있어 해당이 되지 않으며 학교시설부담금을 납부하 겠음	

- 결정권자 : 경기도지사
- 붙 임 : 사업계획도면 1부

약대2구역 주택재개발 종합계획도

축척 : 1 / 1,500



